

종합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한국국학진흥원 종합감사 -

2022. 10. .



♠ 처분요구일람표

1.	회계규정 개정 부적정	(통보)	3
2.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주의)	5
3.	☯☯목록집 분리발주 부적정	(주의)	8
4	직원 출퇴근 ◊◊ 임차용역 계약 부적정	(주의)	10
5	연구년 운영관리 소홀	(시정)	13
6	세계기록문화유산 ◊◊◊◊◊ □□,◊◊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16
7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주의)	18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주의)	20
9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25
10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 배정 부적정	(시정)	27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회계규정 개정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규정」 등에 따라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령 및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입찰 및 지명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담당자가 할 수 있는 계약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고만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위임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위 기관 「회계규정」 제48조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제반업무는 「지방자치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외 계약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자체 규칙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11.11.20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고전국역, 원고 집필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회계규정」에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 받았고, 같은 해 6.15.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수의계약 조항이 임의적으로 회계규정에 추가되어 운용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수의계약 조항은 삭제하시고, 앞으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내부규정에 임의적으로 추가하여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 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규정」 등에 따라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위 기관에서는 ◊◊문화 창작 ○○○○ 및 ◊◊전 행사 대행 용역을 체결하였다.

위 기관 「회계규정」 제48조에 따르면 한국국학진흥원의 계약에 관한 제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외 계약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제3절-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을 입찰공고 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과업내용 및 평가요소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공고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 구 ○○○○○팀에서는 아래 [표 1] 와 같이 20○○.○○.○○.○○.○○문화 창작 ○○○○ 및 ○○○전 행사 대행 용역 사업 관련 정량적 평가와 관련된 평가항목별 점수배점 기준 및 인정 가능한 수행실적을 누락한 채 계약요청 하였고, ○○○○팀에서는 같은 날 ○○○○○팀에서 제출받은 제안요청서 그대로 입찰 공고 하였다.

[표1] 평가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제출서류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표 (3~5점)	제출서류, 등급별 배점기준 미공개
		수행실적	10	최근 5년간 수행 실적	인정 가능한 수행실적 및 실적별 배점기준 미공개
	정성평가	기술지식 능 력	10		
		인력, 조직, 관리기술	20		
		사업수행계획	20		
		지원기술, 사후관리	10		
	상호협력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20		


그리고 같은 해 ○○○. ○○○. 구 ○○○○○팀에서는 입찰참가자들에게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하려는 자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제출서류 및 등급별 배점 기준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2.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 초과

같은 예규 제5장-제2절-4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고,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할 수 있으며,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따르면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 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 구 팀에서는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배점 기준 표를 평가항목별 배점이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일부 항목의 배점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일부 항목에 편중된 점수가 배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 과 같이 정량평가 항목을 2개 부분으로 단순화하고 전체 배점한도(15점)의 30%(4.5점)을 초과하는 5점, 10점으로 각각 배점 되도록 평가 기준 표를 작성하였다.

[표2] 정량평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표

정량평가	전체배점	항 목		비 고
	15	재무구조, 경영상태	5	
	수행실적	10		

그 결과 정량평가 항목이 단순화되고, 배점 기준이 일부 항목에 편중되는 등 예규에서 정한 배점기준을 위반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한 배점기준을 작성하시고, 관련 배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을 입찰공고 시 함께 공개하여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목록집 분리발주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규정」 등에 따라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위 기관 「회계규정」 제48조에 따르면 한국국학진흥원의 계약에 관한 제반업무는 「지방자치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외 계약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1절-5(분할계약금지)에 따르면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 지명입찰,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¹⁾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은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2020.7.15.~2022.12.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해당 예산이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 동일한 과업으로 전체사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 ⅢⅢⅢⅢⅢ에서는 ㉠㉠자료 목록집(71~73), ㉠㉠자료 목록집(74~76)을 분리하여 ㉡㉡㉡㉡팀으로 계약의뢰 하였다.

그 결과 단일사업이 분리발주 되었고, 일괄발주 할 경우 입찰방식을 통해 경북으로 지역제한 되어야 할 계약이 ㉢㉢시 소재 업체로 제한 공고되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은 입찰참여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과업으로 이루어진 단일사업은 일괄발주 하는 등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 ② 「인사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관련자 ㉣㉣㉣을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출퇴근 ㉠㉠ 임차 용역 계약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규정」 등에 따라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위 기관 「회계규정」 제48조에 따르면 한국국학진흥원의 계약에 관한 제반업무는 「지방자치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외 계약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기관에서는 20㉠㉠년 출퇴근 ㉠㉠ 임차 및 운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예정가격 기초금액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2장-제4절-3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¹⁾을 작성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²⁾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예정가격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초금액 작성의 기준이 됨
- (예정가격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에 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2)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그리고 견적가격이란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으로써 같은 예규 제2장-제4절-2에 따르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 임차 운행 용역의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정함에 있어 견적가격은 지양하고, 원가계산이나 거래실례 가격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기관 구 ☒☒과에서는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직전연도 용역비 대비 일정액 증가분을 반영¹⁾하여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계약의 기초가 되는 예정가격 기초금액이 부적정 하게 결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2. 장기계속계약 계약 체결 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용역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용역은 총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하여 회계

1) 직전연도 계약업체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직전연도 계약금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예정가격 기초금액 결정한 후 20☐☐☐☐☐. ☐☐☐☐ 실로 원가심사 의뢰하였으나 ☒☒임차 용역은 조정률이 낮아 심사실익이 없어 원가심사 제외대상 사업이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 진행하라는 회신을 받음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 구 회회과에서는 1차 연도 예정가격 기초금액인 ㉠㉠,㉡㉡㉡천 원을 기준으로 계약요청서를 작성하였고,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구 회회과로 계약요청 하였다.

그리고 구 회회과에서는 장기계속계약 시 검토되어야 할 예정가격 기초금액 및 계약기간에 대한 검토 없이 구 회회과에서 계약 요청한 그대로 입찰공고한 후 계약 체결하였다.

그 결과 3년간 수행되는 장기계속계약이 총액금액 기준이 아닌 최초연도 예정 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되었고,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연장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앞으로 원가계산 등을 통해 용역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결정하시고, 장기계속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연구년 운영관리 소홀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연구직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거나 자율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상 업무수행을 면제하는 6개월에서 1년간의 연구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기관 「인사규정」 제75조에 따르면 원장은 연구직 및 직원의 연구수행, 강의, 행정참여 등의 근무부담을 경감하여 전문성 개발을 통한 학문발전 및 본 한국국학진흥원에 보다 유익한 공헌을 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년 운영세칙」 제10조에는 연구 중인 직원은 연구 계획서에 명기된 연구 활동에 전념하여야 하고, 연구년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한국국학진흥원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년 기간이 종료한 직원은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실적물은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4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세칙 제13조에 따르면 연구년을 사용하였던 직원이 세칙 제10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 연구년 기간이 종료된 직원은 결과보고서 및 학술지 게재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에서는 연구년을 종료한 직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제재를 하여야 했다.

위 기관에서는 20○○. Ⅲ. ⅢⅢ. 20××년도 제○차 ●●위원회를 통해 ▲▲부 ○○연구원 ㄷㄷㄷ을 20○○년도 연구년제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연구원 ◆◆◆은 20丰丰. ㊦. ㊦.부터 20◆◆. ㊧. ㊧.까지 ㉠개월간 연구년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위 ◆◆연구원 ○○○은 20○○. ○. ◆◆.(제출의무일 : 20◆◆. ○. ○.○.) 결과보고서를 20○○. ●. ▲▲.(제출의무일 : 20○○. ◆. ◆◆.) 연구실적물을 제출의무일이 지나서 제출하였고, 2022. 7. 7.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실적물을 학술지에 게재(의무게재일 : 20○○. ◆. ◆◆.)하지 않고 있는 등 연구년이 종료된 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ⅢⅢⅢⅢⅢ에서는 ⅢⅢ연구원 ◆◆◆에게 「연구년 운영세칙」 제10조(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서(㊧㊧㊧㊧팀)에 감사요청 예정이라는 공문(20○○. ㉠. ㊧. ㊧.생산)을 20○○. ㉠. ○○. 메일로만 전달하였다.

이후 20○○. ㉠. ○○. ○○연구원 ○○○으로 부터 ‘등재 학술지의 논문 등재 기준을 맞추지 못하여 연구년 종료 24개월 이내 학술연구재단이 인정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내용을 수정 보완 후 ○월과 ○월에 간행되는 등재 학술지에 투고하여 등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사유서만을 받은 후 2022. 7. 8. 감사일 현재까지 ●●부서(◆◆◆◆팀)에 감사요청 등 필요한 조치는 아니하고 있다.

그 결과 연구년 수행 직원의 의무이행 사항 및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 ① ●●연구원 ○○○○에 대하여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년 운영세칙」 제13조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 ② 「인사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관련자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세계기록유산△△△△△ ○○,◇◇◇◇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ⅢⅢⅢⅢⅢⅢⅢ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세계기록유산◇◇◇◇◇ ○○,◇◇◇◇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하였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하도급 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검사하기 위한 합동검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세계기록유산○○○○○ ○○,○○○○○○시스템 구축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시 제안안내서에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 사업)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자격을 두었고,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세계기록유산○○○○○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인 (주)○○○○○○(계약금액 ㉸㉸㉸백만원)¹⁾이 3D모델링작업을 (주)???)에게 수행하게 하고 ㉸㉸백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하도급²⁾ 여부 등 계약 이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 ② 「인사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관련자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으로 공고문에 명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단독 입찰하여 선정(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된 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도급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20. 1월부터 2022. 7월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 대상시설물 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등 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반영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 리모델링 등의 공사 3건을 시행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 비, 안전보건 교육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그 목적과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국학진흥원 ◆◆◆◆◆ 및 ☐☐◆◆◆◆◆에서는 ☐☐☐◆ 공간 리모델링 등 3건 공사에 대하여 ☐☐☐,☐☐☐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 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회회회회회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가족수당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에 의하면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 지급 기관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수지급 전에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직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가족수당 지급 시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을 하지 않아 가족수당 1,000,0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과다지급한 가족수당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 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 배정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20○○. △△. ▽. △△직에서 ◆◆직으로 ◇◇된 ◇◇
 ◇◇◇팀 ◇◇◇ 외 ●명에 대한 20××년 맞춤형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여 20▽
 ▽년 복지점수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복지점수는 신규 임용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여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2월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20▽▽. ○○. ◇. ◆◆직으로 ◆◆된 ◇◇◇◇◇팀
 ◇◇◇ 외 ◇명에게 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및 본인 의료비 보장보험의 최저
 보상안)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하여야 함에도 연간 기본복지점수, 근
 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한 □개월분 ◇◇◇,◆◆◇원을 20◇◇년
 도에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20□□년도에 지급한 복지점수 □□□,△△△원을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시 정)